

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1. 主要 法的根據

○ 지방세법 제7조(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)

- 제1항 :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2항 :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.

○ 지방세법 제8조(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)

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.

○ 지방세법 제9조(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)

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,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.

2. 提案理由 및 檢討意見

- .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감면범위를 종전 전용면적 85㎡이하에서 100㎡이내로 확대 조정하고 시 지역에서는 993㎡이내의 토지에 대한 시세를 감면코져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지방세법 제7조에 "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아니할 수 있다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."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에서는 " 같은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,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담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." 라고 되어 있는바, 경기세정 13407-709('96. 4. 16)호 및 내무부 세제 13400-126('96. 3. 21)호에 의거 시·군·세 감면 조례증 개정안 시달에 따른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사전허가를 득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